##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637

발의연월일: 2025. 1. 20.

발 의 자:윤준병·김태선·박희승

허 영·정동영·서영교

박홍배 • 안호영 • 허종식

황명선 • 문정복 • 강준현
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군인사법」은 영내징계위원회 개최 시 최소 3명 이상의 선임자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 그러나 이번 12·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내란 사건에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하여 군 수뇌부가 대거가담하여, 징계처분 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자가 3인 미만이 발생하였을 때는 징계위원회 자체가 구성될 수 없음.

이에 징계처분 심의 대상자의 계급이 장성급으로서, 3인 이상의 선임자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'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'를 설치하고,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비상임 징계위원으로 구성하되, 그중 국방부장관이 각 군에서 1인, 합참에서 1인, 민간에서 5인의 군사 또는 법률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고, 위 사유가 발생한 경우 '국방부장관 직속 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'에서 징계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

보하고자 함.

또한 현행법은 장군 보직 해임 시 자동 전역 되도록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필요한 초동조치를 할 수 없음. 이러한 법 규정 때문에 군 검찰의 조사를 받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직책을 그대로 유 지한 채 조사를 받게 되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음.

따라서 수사 및 징계로 인한 장군의 직위 해제 또는 보직 해임의 경우 현역에서 전역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관할 군 검찰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의2제2항 단서, 제20조제3항 단서 및 제58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).

##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수사 및 징계의 사유로 직위 또는 보직에서 해임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20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수사 및 징계의 사유로 직위 또는 보직에서 해임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58조의2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징계처분 심의 대상자의 계급이 장성급으로서 3인 이상의 선임 자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 경우 국방부장관 직속 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, 심의·의결을 통해 징계처분 등을 결 정하여야 한다.
- ④ 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비상임 징계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인원을 위 원으로 위촉하며, 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.
- 1. 각 군 1인

- 2. 합동참모본부 1인
- 3. 군사 또는 법률 전문가 등 외부전문가 5인
- ⑤ 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6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 그 밖에 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의2(장성급 장교의 보직	제16조의2(장성급 장교의 보직
등) ① (생 략)	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장성급 장교는 직위에서 해	②
제되거나 보직기간이 종료된	
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	
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경우	
에는 현역에서 전역된다. <u>&lt;단</u>	<u>다만, 수</u>
<u>서 신설&gt;</u>	사 및 징계의 사유로 직위 또
	는 보직에서 해임된 경우는 적
	용하지 아니한다.
③ • ④ (생 략)	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제20조(중요 부서의 장의 임명	제20조(중요 부서의 장의 임명
등) ① · ② (생 략)	등) ① • ② (현행과 같음)
③ 중장 이상으로서 제1항 각	③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	
위에 있는 사람은 그 직위에서	
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보임	
기간이 끝난 후 다른 직위로	
전직되지 아니하면 현역에서	
전역된다. <u>&lt;단서 신설&gt;</u>	<u>다만, 수사 및 징계의</u>
	사유로 직위 또는 보직에서 해
	임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
	<u>다.</u>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
제58조의2(징계위원회) ① · ② 제58조의2(징계위원회) ① · ②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- (현행과 같음)
- ③ 징계처분 심의 대상자의 계 급이 장성급으로서 3인 이상의 선임자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 경우 국방부장관 직속 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를 설 치하고, 심의 · 의결을 통해 징 계처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. ④ 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비상임 징계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 우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인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며, 장 성급 장교 징계위원회의 위원 장은 위원 중에서 국방부장관 이 임명한다.
- 1. 각 군 1인
- 2. 합동참모본부 1인
- 3. 군사 또는 법률 전문가 등 외부전문가 5인
- ⑤ 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6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.

<b>/시</b>	선>
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\	´ = /

 ⑥
 그
 밖에
 장성급
 장교
 징계

 위원회의
 조직
 및
 운영에
 관한

 사항은
 국방부령으로
 정한다.